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|
| 박은별 | 920330-**** |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| он | 월별 보수월액(고지금액) | | 소득월액(| [납부금액)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결길 | 건강보험료① | 장기요양보험료② | 건강보험료③ | 장기요양보험료④ |
| 01월 | 109,310 | 9,300 | 0 | 0 |
| 02월 | 109,310 | 9,300 | 0 | 0 |
| 03월 | 109,310 | 9,300 | 0 | 0 |
| 04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05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06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07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08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09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10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11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12월 | 141,600 | 12,050 | 0 | 0 |
| 연말정산 | 393,030 | 28,980 | | |
| 합계 | 1,995,360 | 165,330 | 0 | 0 |
| 총합계 | | | | 2,160,690 |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| 월별 |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|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01월 | 150,210 | 0 |
| 02월 | 150,210 | 0 |
| 03월 | 150,210 | 0 |
| 04월 | 150,210 | 0 |
| 05월 | 150,210 | 0 |
| 06월 | 150,210 | 0 |
| 07월 | 194,580 | 0 |
| 08월 | 194,580 | 0 |
| 09월 | 194,580 | 0 |
| 10월 | 194,580 | 0 |
| 11월 | 194,580 | 0 |
| 12월 | 194,580 | 0 |
|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| 0 | |
| 추납보 | 0 | |
| 실업크 | 0 | |
| 합계 | 2,068,740 | 0 |
| | 총합계 | 2,068,740 |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 |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| 상 호 | | 보험종. | 류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종류 | 사업자번호 | | 증권번호 | | 주피보험 | 자 | 납입금액 계 |
| | 종피보험자1(| (수익자) | 종피보험자20 | (수익자) | 종피보험자3(| 수익자) | |
| | 메리츠화재해상보 | .험주식회사 | M-Drive1 | 309 | | | |
| 보장성 | 116-81-03 | 3*** | 60587253 | 352 | 920330-**** | 박은별 | 300,000 |
| | | | | | | | |
| |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| |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 | | | | |
| 보장성 | 220-88-52 | 2*** | 20092148 | 596 | 920330-***** | 박은별 | 346,728 |
| | | | | | | | |
| | 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 | | 무배당 삼성화재암보험 유비무암 | | | | |
| 보장성 | 202-81-4 | 5*** | 5141357347 | 70000 | 920330-***** | 박은별 | 360,000 |
| | | | | | | | |
| | 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 | | 무배당멀티플암보험(Hi1204) | | | | |
| 보장성 | 102-81-32 | 2*** | L01216220187 | | 920330-**** | 박은별 | 360,000 |
| | | | | | | | |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 |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| 상 호 | | 보험종 | 류 | | |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종류 | 사업자번호 | | 증권번호 | | 주피보험 | 자 | 납입금액 계 |
| | 종피보험자1(수익자) | | 종피보험자2(수익자) | | 종피보험자3(| 수익자) | |
| | 엠지손해보험 | 주식회사 | 해외여행 | 행 | | | |
| 보장성 | 220-88-52 | 2*** | 20190093 | 121 | 920330-***** | 박은별 | 6,210 |
| | | | | | | | |
| | 흥국화재해상보 | .험 (주) | 행복을주는가족사형 | 랑보험(1006) | | | |
| 보장성 | 102-81-07 | 7*** | 4100392111 | 10000 | 920330-***** | 박은별 | 243,396 |
| | | | | | | | |
| | 인별합계금액 | | 1, | | 1,616,334 | | |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**0-96-08*** | 위***** | 일반 | 66,200 |
| **7-56-07*** | 가*** | 일반 | 2,800 |
| **7-16-07*** | 메*** | 일반 | 17,500 |
| **7-19-69*** | 스***** | 일반 | 4,700 |
| **7-17-89*** | Ω**** | 일반 | 1,546,840 |
| **3-92-00*** | <u>*</u> ***** | 일반 | 140,000 |
| **4-38-63*** | 부***** | 일반 | 174,100 |
|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| | | 1,952,140 |
|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| | | 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1,952,140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25,191,609 | 450,100 | 779,100 | 2,290 | 26,423,099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신용카드 | 120-81-54*** | 롯데카드 주식회사 | 일반 | 1,386,250 |
| 신용카드 | 120-81-54*** | 롯데카드 주식회사 | 전통시장 | 255,100 |
| 신용카드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주) | 일반 | 98,100 |
| 신용카드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주) | 대중교통 | 52,700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| 일반 | 3,235,710 |
| 신용카드 | 202-81-48*** | 신한카드 주식회사 | 일반 | 17,694,177 |
| 신용카드 | 202-81-48*** | 신한카드 주식회사 | 전통시장 | 117,500 |
| 신용카드 | 202-81-48*** | 신한카드 주식회사 | 대중교통 | 726,400 |
| 신용카드 | 202-81-48*** | 신한카드 주식회사 | 도서공연등 | 2,290 |
| 신용카드 | 104-86-56*** | 하나카드 주식회사 | 일반 | 2,777,372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00121-20674413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신용카드 | 104-86-56*** | 하나카드 주식회사 | 전통시장 | 77,50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| 26,423,099 |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2,598,582 | 0 | 44,400 | 0 | 2,642,982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| 사 업 자 번 호 | 상 호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직불카드 등 | 202-81-48*** | 신한카드 주식회사 | 일반 | 1,711,142 |
| 직불카드 등 | 375-88-00*** | 한국카카오은행(주) | 일반 | 887,440 |
| 직불카드 등 | 375-88-00*** | 한국카카오은행(주) | 대중교통 | 44,40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| 2,642,982 |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1,296,903 | 61,945 | 0 | 0 | 1,358,848 |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| | | 월별 공제대상금액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78 | 조 근 | 01월 | 02월 | 03월 | 04월 | 고레디사그에 |
| 구분 | 종류 | 05월 | 06월 | 07월 | 08월 | 공제대상금액 |
| | | 0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|
| | 16,680 | 20,000 | 760,910 | 74,740 | | |
| 현금영수증 |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| 64,200 | 12,200 | 14,800 | 14,300 | 1,296,903 |
| | | 252,173 | 21,100 | 40,700 | 5,100 | |
| | 0 | 33,000 | 28,945 | 0 | | |
| 현금영수증 | 전통시장거래 | 0 | 0 | 0 | 0 | 61,945 |
| | | 0 | 0 | 0 | 0 |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기본내역 [연금저축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|
| 박은별 | 920330-**** |

■ 연금저축 납입내역 (단위:원)

| 상호 | 사업자번호 | 당해연도 납입금액 |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| 순납입금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계좌번호 | | 납입금액 | 인출금액 | |
|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| 104-86-39*** | 1 200 000 | 0 | 1,200,000 |
| 121075018152721 | | 1,200,000 | 0 | 1,200,000 |
|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| 104-86-39*** | 3,000,000 | 0 | 3,000,000 |
| 3180145252111 | | 3,000,000 | 0 | 3,000,000 |
| 순납입금액 합계 | | | | 4,200,000 |

※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)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.

-10-

- 1. 연금저축(2001.1.1. 이후 가입) :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
- 2. 세액공제 대상금액 : 납입액(전환 신청 금액 포함)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3. 공제 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,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)
- 4.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--|--------------|
| 박은별 | 920330-***** |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업자번호 | 단체명 | 기부유형 | 기부금액 합계 | 공제대상 기부금액 |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05-82-03569 | 사회복지법인 세이 브더칠드런코리아 |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| 400,000 | 400,000 | 0 |
| 603-82-07337 | (사)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부산지회 |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| 10,000 | 10,000 | 0 |
| 인별합계금액 | | | | | 410,000 |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11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